

회원사 업무 설명회

2016. 7月

한 국 대 부 금 융 협 회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주요사항

①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 금융위 등록대상 :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자
- ※ 기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중 법 시행 이후 신규채권 매입을 하지 않으려는 자는 시·도 등록 및 기보유채권 추심 가능

② 대부업등 등록요건의 강화

-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
-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2년→5년)을 강화

③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운영 건전성 강화

-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함(위반 시 영업정지)
-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의 겸업 금지(위반 시 등록취소)
- 사회적 신용요건 신설: 법인 또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위반 시 등록취소)
 - 대부업법,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 채무불이행 등
 -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등이 취소

④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 자산 500억원 이상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할 기준과 보호감시인을 갖추도록 규정(위반 시 영업정지)

⑤ 보증금 제도 도입

-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 위반시 영업정지)
- 대부업 등록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증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⑥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 대기업 계열의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금융기관 계열은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
- 대기업 계열 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시 감독원 보고
- 신용공여제한 위반 대부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⑦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 양도 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제한

⑧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 대부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음성녹음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
-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 규정**
- 영업정지·과태료 위반 횟수 산정 기간 : 3년 이내 위반한 횟수 (기존 1년)

대부업등 등록 요건의 강화

□ 최소자기자본 요건 신설(대부업자만 해당)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 3억원
- 시도 등록 대부업자 :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순자산)
 - ※ 자기자본 :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 **증명서류**(감독규정 별지서식-대부업등록신청서)
 - 신규법인 설립 시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대부업 경영 시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기존 업체는 **2017.1.25까지 자기자본 구비 필요(등록취소 사유)**

□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 고정사업장 **제외 범위**에 숙박시설 외 **단독주택·공동주택 추가**
- 등록신청(갱신신청)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필요**
- 기존 업체는 **등록갱신 시부터 적용**

□ 손해배상보증금 예탁제도 신설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금 예탁기관 : 협회(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
- **보증금 예탁**(보험 최소보증금액) 금액
 - 금융위원회 등록 시 : 5천만원 / 시도 등록 시 : 1천만원
- 기존 업체는 **2017.1.25까지 보증금 예탁 등 필요**
 -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보험/공제가입 증명서류 제출 (영업정지 사유 - 위반 1회: 전부정지 6개월, 위반 2회: 등록취소)
- 대부업 등록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증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임원 및 법인 결격 사유 강화

□ 임원 및 법인 결격사유

구분	결 격 사 유
법인/임원 공동 결격사유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 대부업 폐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인 결격사유 (법 §3의5)	○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50①-③, 개인정보법 §71,72,73 - 형법 일부(폭행, 협박 등) 및 폭력행위처벌법 [※채권추심 관련 한정]
임원 등 결격사유 (법 §4)	사도 및 금융위 공동 ○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부터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융위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유가 있는 자 - 벌금형 이상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 5년 미경과 -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된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취소일로부터 5년 미경과 - 해임, 면직된 후 5년 미경과

□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 시 등록취소
-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결격사유 해당 시 면직
 - 단, 시도등록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취소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

□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등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등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 선임하여야 함.(법 §9의7, 영 §6의6)
- 관련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사유 해당
 - 위반 2회 : 일부정지 1개월, 3회 : 일부정지 3개월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주요내용

- 보호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 ▲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 ▲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형식·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이사회가 있는 경우) 보호기준의 변경 시 의사회 결의 필요
-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대부금융사의 보호기준 작성을 위한 “대부업 이용자보호 모범기준” 배포 예정

□ 보호감시인 선임 관련

- 자격 요건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금융/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퇴임·퇴직 후 5년이 경과한 자

- ②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사유가 없는 것
- ③ 최근 5년간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보호감시인이 된 후 ②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③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감시인 직을 상실.
- 보호감시인 선임·면직 시 **이사회 결의**(법 §9의7③) 및 **임면사실 금융감독원 통보**(규정 §12②)
 -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보호감시인 임면통보서 마련 예정(다음 페이지 참조)

□ 보호감시인의 업무 등

-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영 §6의6②, 규정 §12①)

- ▲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 ▲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 ▲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 ▲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 ▲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 ▲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업무 및 그 부수업무 업무 겸직 제한(영 §6의6⑦)
 - 단 대부거래자 수 1천명 미만인 경우 예외 인정
-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 불가(영 §6의6⑥)
-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 상 불이익 금지(감독규정 §12⑤)

시행세칙(안) <별지 제1호 서식>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¹⁾	타당당업무 ²⁾ 및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 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

2) 보호감시인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임)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끝.

(붙임)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성명(한자)	직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비고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①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2호)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⑧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			

있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⑨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⑪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⑫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대부업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5년간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3호)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②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업무		
종 합 의 건		
20 년 월 일 ○○○대부(중개) 보호감시인 ○○○ (인) ○○○대부(중개) 대표이사 ○○○ (인)		

첨부서류 : 1) 이력서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

시행세칙(안) <별지 제2호 서식>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위	생년월일	선임일	임기만료일	해임(퇴임)일	해임(퇴임)사유	비고

총자산 한도 제한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 규제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못함.
- 총자산한도는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

상법 제30조(사업장부의 작성방법)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법 시행 당시 총자산한도에 위반한 대부업자는 2년 이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시행 당시 총자산한도에 적합한 경우 경과조치(유예) 적용 안됨.
- 관련 조문

대부업법 제7조의3(총자산 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 부칙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성녹취 자필기재 인정

□ 대부계약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함.
 - ▶ 채무자 자필기재사항 :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 ▶ 보증인 자필기재사항 :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보증의 범위
- (기존) 시행령의 공백으로 인해 법률로 정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필기재 이외 음성녹음을 통한 자필기재 인정 안됨.
 - ※ 대부업권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자필기재 사항 인터넷 입력만 인정(용도제한용[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 음성 녹음의 중요사항 자필기재 인정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성녹음의 자필기재 인정 근거 마련
- 채무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음성녹음을 자필기재로 인정할 것으로 보임.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를 통한 확인방법을 모두 구비하여야 자필기재로 인정.
- 음성 녹음으로 자필기재를 대신한 경우에도 계약서 교부 및 계약서 보관의무 있음.
- 단, 보증계약의 경우 “자필 서명”된 계약서 징구 필요
 - 개정 민법(16.2.4 시행)에 따라 보증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만 효력 발생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관련 조문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가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 가. 전화
 - 나. 인터넷 홈페이지
 - 다. 서면확인서

광고 표시 규정 일부개정 사항

□ 필수표기사항 표시방법 일부 완화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부대비용, 과도차입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 경고문구는 **상호와 같거나 크게** 표시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시 등록번호 및 등록기관
명칭·전화번호 표시 변경 필요

-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될 예정임.
- 광고 표시에 등록번호 및 등록기관 전화번호 변경 필요
 예) 대부업 등록번호 : 2016-금감원-0000-000(대부업)
 2016-금감원-0000-000(대부중개업)
 등록기관 표시 : 금융감독원(1332)

☐ 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구체화

- 다음 각 호의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금지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정점다리론(감독규정 § 11)

☐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강화 대책 반영 및 협회 심의를 통한 대부업 광고 자율규제 강화 필요
- 주요 개정 추진사항
 - 주요 일간지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도입
 - 보호감시인(또는 협회등록 준법관리인)의 사전검토 추가
 - 기타 건전한 대부금융 질서를 해치는 표현 금지
 - 그 외 개정 대부업법령 사항 반영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검사제재규정 상 금융업관련법에 “대부업법” 추가(규정 §2)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시 동 규정 적용
 - 규정 주요내용 :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의 금융감독원 보고, ▲ 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른 임직원 제재의 이사회보고, ▲ 징계기록의 유지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 [16.7.25 시행]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대상 대부업자 대상 변경(영 §21)
 - ▶ 기존 :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
 - ▶ 변경 :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부업자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가능 대상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로 변경됨.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대부업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정보집중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됨.

▶ 신용정보법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동법 시행령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16.9.23 시행예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체결 대상으로 규정(법 §75)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 규정,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체결 의무 부과(시행령(안) §55)
 - 신용회복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약 미체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동법 시행령(안)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안내” 참조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 대해 사용 권장

- 업무보고서 작성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작성할 필요 있음.

□ 주요 사항

주요 항목	내 용
결산월 통일	▶ '18.12.31 까지 유예
자동차 담보대출	▶ 담보대출로 분류
추가지급 권리금의 인식방법	▶ 추가지급 된 권리금이 회수 가능시 보증금으로 인식 ※ 영업권으로 인식 불가, 임차보증금 이외 추가 지급된 권리금에 대해 영업권 인식 불가
매입채권 원가산정	▶ 개별채권 별 원가산정 (예외적인 경우 일괄매입 가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원가 산정)
타대부업체 차입금이자 처리기준	▶ 일반차입금이자로 인식 (금융기관차입금이자 아님)
매입채권 분류기준	▶ 외부양수채권은 정상 및 부실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입채권으로 분류
매입채권 처분손실	▶ 매입채권처분손실 계정 과목의 정의 추가 (상기 정의에 따른 매입채권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처리)
미수수익	▶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미수수익으로 인식)

※ 별첨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참조(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대부업 신용정보의 타입권 공유 관련

□ 현황 및 경과

- 지난 2015년 대부금융업은 금융위원회 요구에 따라 현재 대부금융업 신용정보 중 일부 항목을 저축은행업권에 공개 결정

구 분	대부금융업 신용정보 공개 주요내용
공개항목	- 대출총금액, 대출총건수, 일자별 대출잔액
공유시점	- 16.1.1일 이후 신규대출 전에 한정하여 공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16.1월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대부금융업 신용정보의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금융업 신용정보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 진행(16.3.22. 1차 회의 실시)
- 1차 회의 후 지난 2016.4.20.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 보유 대부금융업 신용정보의 저축은행업권 및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유 결정

※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16.6.7)

구 분	추가 공유 주요내용
공유업권	- 대부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인터넷전문은행
공유항목	-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금융 신용정보 ※ 대출정보, 보증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등 단, 대출회사명 제외
공유시점	- 2016.8.16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일부개정

□ 개정 주요 내용

- 대부업 이용자 민원 예방을 위해 대부금융사 및 대부중개인의 안내의무 강화
 - 대부금융사 및 하위단독중개인은 연대보증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성격 안내 및 녹취의무
 - ※ 대부업 이용자보호 모범기준(안)에서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내의무 강화 관련 사항 반영 예정
 - 아래의 문구를 기존 안내사항에 추가하여 안내 및 녹취할 것

※ 본 대출상품은 연대보증상품으로 연대보증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상품의 성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연대보증인의 답변 확인)
 - 안내의무 위반 시 제재금 부과(적법수집확인서 의무 위반과 동일 수준)
- 규정 위반 대부중개인에 대한 협회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업체 명단(취소사유 포함) 공개 근거 마련
 - 등록취소 사유 : 협회 등록의무 위반, 교육이수의무 위반, 과대·허위·과장광고 등
- 시행 : 2016년 7월 18일

※ 규정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한계채무자 지원제도 확대 시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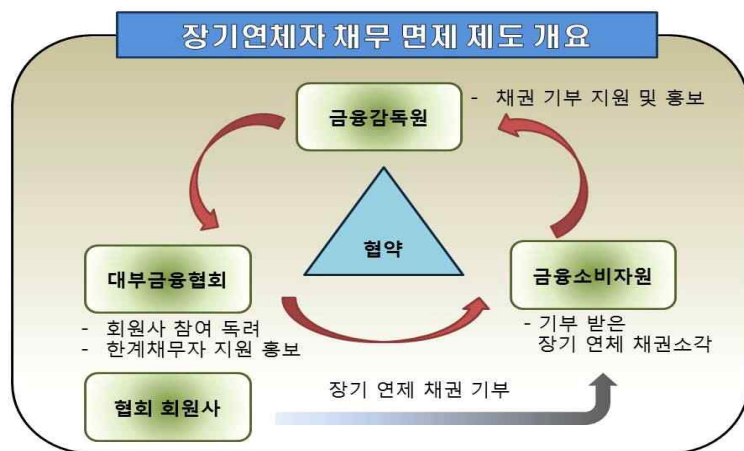
□ 한계지원자 지원제도 현황

- 2012.9월부터 협회는 과다채무 및 경제력상실 등으로 채무불능 상태에 처한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화해와 채무유예 제도를 도입 운영(「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 2015년 말 현재 총 52개 회원사가 협회와 협약을 체결, 사고·사망자 2,182명에 대하여 38억 9천만원의 채무를 유예·감면하여 한계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한계채무자 지원확대 방안

- 현재 운영 중인 채무유예 및 감면 제도를 확대, 장기간 연체 상태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면제 지원 추진
- 장기연체자 채무 면제 제도
 - 금융당국, 금융소비자원과 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면제 사업 추진
 - ※ 예시 : 5년 이상 연체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상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
 - 대부금융사는 장기연체채권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 기부, 금융소비자원은 기부 받은 채권의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
 - * 구체적인 기부 정도는 개별회사 자율결정
 - 예시 : 회사의 영업이익 10%의 범위 내에서 장기연체 채무면제

- 금융당국과 협회는 대내적으로 대부금융사의 한계채무자 지원을 권장·독려하고, 대외적으로 한계채무자 지원 실적을 적극 홍보



□ 시행시기

- 향후 회원사 의견 수렴 및 일정 수 이상의 회원사 참여 시 시행